

『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미경 의원 외 8명

2. 제안이유

- 경북 무형문화재 제40호인 무을농악을 현대적으로 계승·발전시키고, 무을농악의 계보를 잇고 있는 젊은 인재들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립농악단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립예술단의 종류에 구미시립농악단 신설(안 제2조)
 - 구미시립농악단 : 예술감독 1명과 단원 50명 이내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 - 전통예술의 하나인 농악의 계보를 잇고 있는 젊은 인재들을 활용하여 지역 전통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 시립농악단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2017. 1월 경북 무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된 바 있는 무을농악은 영남농악의 뿌리로서 전승·보전할 가치가 있으며, 시립농악단 창단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창조적 계승과 우수한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무을농악과 연계하여 전통예술을 전문적으로 배운 젊은 인재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악을 현대적, 문화적으로 계승·발전시키는 구미만의 독특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상설·정기공연으로 지역문화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특히, 무을풍물보존회는 1954년 창단하여 현재 60여명이 활동 중으로 그동안 무을농악의 전통을 계승·발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, 시립농악단 창단 시 보존회와의 상생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전통농악의 우수성과 활용도는 충분히 인정되나, 시립농악단 창단 및 운영에 따라 연간 약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예산 지원 가능여부와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서의 의견이 있었음.
-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본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단원 구성 및 수당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.